의 안 번 호			제385호	
의		결	2023.	
연	월	일	(제	회)

충청북도 디지털성범죄 방지 및 피해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발 의 자	김정일 의원 등 7인
발의연월일	2023년 8월 28일

충청북도 디지털성범죄 방지 및 피해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(김정일 의원 대표발의)

의 안 번호 385

발의연월일 : 2023년 8월 28일

발 의 자 : 김정일, 이상정, 박봉순,

안지윤, 안치영, 조성태,

박지허

1. 제안이유

○ 디지털성범죄의 정의를 「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」등 관련법령에 따라 정비하고, 피해자의 2차 피해 방지 대책을 마련 하려는 것임.

2. 주요내용

- O 디지털성범죄 정의를 「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」등을 근거로 폭넓게 규정함(안 제2조)
- 피해자 지원내용의 애매모호한 표현을 명확하게 규정함(안 제6조)
- 피해자의 2차 피해 방지에 필요한 대책마련을 규정함(안 제9조)
- O 법제처의 알기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띄어쓰기 등 자구수정함 (안 제1조, 제6조~제7조)

3. 의안전문 : 붙임

4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 및 규정 : 붙임

나. 조례안예고 : 충청북도의회 공고 제2023 - 호

다. 협 의: 양성평등가족정책관

라. 비용추계 : 해당없음

충청북도 디지털성범죄 방지 및 피해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충청북도 디지털성범죄 방지 및 피해자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1조 중 "사항을규정함"을 "사항을 규정함"으로 한다.

제2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.

제2조(정의)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.

- 1. "디지털성범죄"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.
 - 가. 「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」 제13조, 제14조, 제14조의2 및 제14조의3에 따른 행위
 - 나. 「아동·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」 제11조 및 제15조의2에 따른 행위
 - 다. 「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」 제44조의7제1 항제1호에 따른 행위
 - 라. 그 밖에 디지털 기기나 정보통신기술을 매개로 오프라인 또는 온라 인상에서 타인의 성적 자율권과 인격권을 침해하는 행위
- 2. "디지털성범죄 피해자"란 디지털성범죄로 신체적·정신적·재산적 피해를 입은 사람을 말한다.

제6조제1항제4호 중 "유포 및 삭제 지원 현황"을 "삭제지원 및"으로 하고, 같은 항 제5호 중 "유관기관"을 "유관 기관"으로 한다.

제7조제2항 중 "관계기관"을 "관계 기관"으로 한다.

제8조제1항을 제목 외의 부분으로 한다.

제9조를 제10조로 하고, 같은 조(종전의 제9조) 중 "「개인정보보호법」"을 "「개인정보 보호법」"으로 하며, 제9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제9조(2차 피해 방지) 도지사는 디지털성범죄 방지 및 피해자 보호·지원과 관련된 업무 수행 과정에서 피해자의 인격이나 명예를 손상하는 등의 2차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업무 관련자 교육 등 대책을 마련하여야 한다.

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・구조문대비표

개 정 안 혅 했 제1조(목적) 이 조례는 디지털성 제1조(목적) -----범죄 방지 및 피해자 지원에 관 한 사항을규정함으로써 충청북 -- 사항을 규정함-----도민의 인권증진에 기여함을 목 적으로 한다. 제2조(정의) 이 조례에서 "디지털 제2조(정의) 이 조례에서 사용하 성범죄"란 동의 없이 사진이나 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. 영상을 촬영・유포하거나 이를 1. "디지털성범죄"란 다음 각 목 빌미로 협박하는 행위와 허위 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 영상물 편집ㆍ합성ㆍ가공 및 반 위를 말한다. 포 등을 통해 사이버 공간에서 가. 「성폭력범죄의 처벌 등 의 성적 괴롭힘 등을 말한다. 에 관한 특례법」 제13조, 제14조, 제14조의2 및 제14 조의3에 따른 행위 나. 「아동・청소년의 성보호 에 관한 법률 | 제11조 및 제15조의2에 따른 행위 다. 「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 률」제44조의7제1항제1호 에 따른 행위 라. 그 밖에 디지털 기기나 정 보통신기술을 매개로 오프

라인 또는 온라인상에서

- 제6조(피해자 지원) ① 도지사는 저다지털성범죄 피해자 지원을 위해 다음 각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.
 - 1. ~ 3. (생략)
 - 4. 디지털성범죄 영상 등 <u>유포</u><u>및 삭제 지원 현황</u> 모니터링
 - 5. 디지털성범죄 피해자 종합사례 관리 및 <u>유관기관</u> 네트워크 구축
 - 6. (생략)
 - ② (생략)

제7조(교육 및 홍보) ① (생 략) 저

② 도지사는 교육기관, 민간단체, 언론기관 그 밖의 <u>관계기관</u>과 협력하여 디지털성범죄 방지및 피해자 지원 등에 관한 자료의 제작·보급 등 홍보활동을할 수 있다.

<u>타인의 성적 자율권과 인</u>
격권을 침해하는 행위
2. "디지털성범죄 피해자"란 디
지털성범죄로 신체적·정신적
•재산적 피해를 입은 사람을
말한다.
- <u>=</u> 세6조(피해자 지원) ①
¶Oユ(의 M/Y / Y セ/ セ/
1. ~ 3. (현행과 같음)
4 <u>삭제</u>
지원 및
5
<u>유관 기관</u>
6. (현행과 같음)
② (현행과 같음)
세7조(교육 및 홍보) ① (현행과
같음)
②
관계 기관

제8조(협력체계 구축) ① (생 략) 제8조(협력체계 구축) (현행 제1 <신 설>

제9조(비밀준수의 의무) 이 조례 에 따른 디지털성범죄 방지 및 피해자 보호 · 지원과 관련된 업 무에 종사하였거나 종사하는 사 람은 그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해서는 아니 되며 _「개인정 보보호법 | 을 준수하여야 한다.

항과 같음) 제9조(2차 피해 방지) 도지사는 디지털성범죄 방지 및 피해자 보호 · 지원과 관련된 업무 수행 과정에서 피해자의 인격이나 명 예를 손상하는 등의 2차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업무 관련자 교 육 등 대책을 마련하여야 한다. 제10조(비밀준수의 의무) -----

보 보호법 | ----

관련법령 발췌

□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별법

- 제13조(통신매체를 이용한 음란행위)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, 우편, 컴퓨터,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, 음향, 글, 그림,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.
- 제14조(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) ①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.
 - ② 제1항에 따른 촬영물 또는 복제물(복제물의 복제물을 포함한다. 이하 이조에서 같다)을 반포·판매·임대·제공 또는 공공연하게 전시·상영(이하 "반포등"이라 한다)한 자 또는 제1항의 촬영이 촬영 당시에는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지 아니한 경우(자신의 신체를 직접 촬영한 경우를 포함한다)에도 사후에 그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반포등을 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.
 - ③ 영리를 목적으로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「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」 제2조제1항제1호의 정보통신망(이하 "정보통신망"이라 한다)을 이용하여 제2항의 죄를 범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.
 - ④ 제1항 또는 제2항의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소지·구입·저장 또는 시청 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.

- ⑤ 상습으로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죄를 범한 때에는 그 죄에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.
- 제14조의2(허위영상물 등의 반포등) ① 반포등을 할 목적으로 사람의 얼굴 · 신체 또는 음성을 대상으로 한 촬영물·영상물 또는 음성물(이하 이 조에서 "영상물등"이라 한다)을 영상물등의 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형태로 편집·합성 또는 가공(이하 이 조에서 "편집등"이라 한다)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.
 - ② 제1항에 따른 편집물·합성물·가공물(이하 이 항에서 "편집물등"이라한다) 또는 복제물(복제물의 복제물을 포함한다. 이하 이 항에서 같다)을 반포등을 한 자 또는 제1항의 편집등을 할 당시에는 영상물등의 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사후에 그 편집물등 또는 복제물을 영상물등의 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반포등을 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.
 - ③ 영리를 목적으로 영상물등의 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제2항의 죄를 범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.
 - ④ 상습으로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죄를 범한 때에는 그 죄에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.
- 제14조의3(촬영물 등을 이용한 협박·강요) ①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촬영물 또는 복제물(복제물의 복제물을 포함한다)을 이용하여 사람을 협박한 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.
 - ② 제1항에 따른 협박으로 사람의 권리행사를 방해하거나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.
 - ③ 상습으로 제1항 및 제2항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그 죄에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.

□ 아동·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

- 제11조(아동·청소년성착취물의 제작·배포 등) ① 아동·청소년성착취물을 제작·수입 또는 수출한 자는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.
 - ② 영리를 목적으로 아동·청소년성착취물을 판매·대여·배포·제공하거나 이를 목적으로 소지·운반·광고·소개하거나 공연히 전시 또는 상영한 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.
 - ③ 아동·청소년성착취물을 배포·제공하거나 이를 목적으로 광고·소개 하거나 공연히 전시 또는 상영한 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.
 - ④ 아동·청소년성착취물을 제작할 것이라는 정황을 알면서 아동·청소년을 아동·청소년성착취물의 제작자에게 알선한 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.
 - ⑤ 아동·청소년성착취물을 구입하거나 아동·청소년성착취물임을 알면서 이를 소지·시청한 자는 1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.
 - ⑥ 제1항의 미수범은 처벌한다
 - ⑦ 상습적으로 제1항의 죄를 범한 자는 그 죄에 대하여 정하는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.
- 제15조의2(아동·청소년에 대한 성착취 목적 대화 등) ① 19세 이상의 사람이 성적 착취를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아동·청소년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.
 - 1. 성적 욕망이나 수치심 또는 혐오감을 유발할 수 있는 대화를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하거나 그러한 대화에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참여시키는 행위
 - 2. 제2조제4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도록 유인·권유하는 행위

② 19세 이상의 사람이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16세 미만인 아동·청소년에 게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 제1항과 동일한 형으로 처벌한다.

□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

- 제44조의7(불법정보의 유통금지 등) ①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보를 유통하여서는 아니 된다.
 - 1. 음란한 부호·문언·음향·화상 또는 영상을 배포·판매·임대하거나 공 공연하게 전시하는 내용의 정보
 - 2.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공공연하게 사실이나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타 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내용의 정보
 - 3.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부호·문언·음향·화상 또는 영상을 반복적으로 상대방에게 도달하도록 하는 내용의 정보
 - 4. 정당한 사유 없이 정보통신시스템, 데이터 또는 프로그램 등을 훼손·멸실 •변경·위조하거나 그 운용을 방해하는 내용의 정보
 - 5. 「청소년 보호법」에 따른 청소년유해매체물로서 상대방의 연령 확인, 표 시의무 등 법령에 따른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고 영리를 목적으로 제공 하는 내용의 정보
 - 6. 법령에 따라 금지되는 사행행위에 해당하는 내용의 정보
 - 6의2. 이 법 또는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법령을 위반하여 개인정보를 거래하는 내용의 정보
 - 6의3. 총포·화약류(생명·신체에 위해를 끼칠 수 있는 폭발력을 가진 물건을 포함한다)를 제조할 수 있는 방법이나 설계도 등의 정보
 - 7. 법령에 따라 분류된 비밀 등 국가기밀을 누설하는 내용의 정보
 - 8. 「국가보안법」에서 금지하는 행위를 수행하는 내용의 정보
 - 9. 그 밖에 범죄를 목적으로 하거나 교사(敎唆) 또는 방조하는 내용의 정보

- ② 방송통신위원회는 제1항제1호부터 제6호까지, 제6호의2 및 제6호의3의 정보에 대하여는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또는 게시판 관리·운영자로 하여금 그 처리를 거부·정지 또는 제한하도록 명할수 있다. 다만, 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정보의 경우에는 해당 정보로인하여 피해를 받은 자가 구체적으로 밝힌 의사에 반하여 그 처리의 거부·정지 또는 제한을 명할수 없다.
- ③ 방송통신위원회는 제1항제7호부터 제9호까지의 정보가 다음 각 호의 모두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또는 게시판 관리·운영자에게 해당 정보의 처리를 거부·정지 또는 제한하도록 명하여야 한다.
- 1.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요청[제1항제9호의 정보 중 「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」 제14조에 따른 촬영물 또는 복제물(복제물의 복제물을 포함한다)에 대하여는 수사기관의 장의 요청을 포함한다]이 있었을 것
- 2. 제1호의 요청을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후 「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」제21조제4호에 따른 시 정 요구를 하였을 것
- 3.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나 게시판 관리·운영자가 시정 요구에 따르지 아 니하였을 것
- ④ 방송통신위원회는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명령의 대상이 되는 정보통신 서비스 제공자, 게시판 관리·운영자 또는 해당 이용자에게 미리 의견제출 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. 다만,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는 의견제출의 기회를 주지 아니할 수 있다.
- 1. 공공의 안전 또는 복리를 위하여 긴급히 처분을 할 필요가 있는 경우
- 2. 의견청취가 뚜렷이 곤란하거나 명백히 불필요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
- 3. 의견제출의 기회를 포기한다는 뜻을 명백히 표시한 경우

비용추계서 첨부제외 사유서

O 첨부제외 관련규정

- 「충청북도 입법에 관한 조례」제11조(비용추계서 작성대상) 제4항제1호

제11조(비용추계서 작성대상)

- ④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비용추계서 작성을 생략할 수 있다. 다만, 비용추계서 작성을 생략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사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.
 - 1.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·권고적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

O 사 유

- 본 개정안은 디지털성범죄의 정의를 관계법령에 따라 정비하고 피해 자의 2차피해 방지에 필요한 대책을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, 별도의 예산이 수반되지 않음